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4년 4월 23일
전문위원 강 영 식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2014 - 4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 제 출 일 : 2014년 4월 16일
- 회부일자 : 2014년 4월 17일

2. 개정이유

- 마곡도시개발구역 내 공동주택의 일부가 2014년 6월 입주예정으로서 기존 법정동 경계 존치시 1개 필지에 2개의 법정동 혼재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마곡도시개발구역 내 법정동 명칭이 마곡동이 아닌 2,761필지, 긴등마을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 219필지 및 기타 사업지구외 28필지의 법정동 명칭을 대로를 경계로 마곡동으로 변경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 「행정구역 조정업무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2014.2.19. ~ 3.11) 결과 : 의견없음

라.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마곡도시개발구역 내 공동주택의 일부가 2014년 6월 입주예정으로서 기존 법정동 경계 존치시 1개 필지에 2개의 법정동 혼재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 마곡도시개발구역 내 법정동은 6개동(가양동, 마곡동, 내발산동, 외발산동, 공항동, 방화동)이 속해있고, 행정동은 4개동(가양1동, 발산1동, 공항동, 방화1동)이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음.
- 도시개발 사업시행에 따라, 기존 법정동 경계로는 1개 필지에 2개의 법정동이 혼재되어 주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기존 명칭이 마곡동이 아닌 2,761필지, 긴등마을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 219필지 및 기타 사업지구외 28필지의 법정동 명칭을 대로를 경계로 마곡동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 련 자 료】

행정구역 변경 조서

해당구역동	변경전 면적(m ²)	변경후 면적(m ²)	증감 면적		다른 지역으로부터 편입		다른 지역으로 이동	
			증(m ²)	감(m ²)	동	면적(m ²)	동	면적(m ²)
가양동	3,810,030	2,466,310		1,343,720			마곡동	1,343,720
마곡동	2,738,112	5,355,579	2,617,466		가양동 외4개동	2,617,466		
내발산동	2,075,581	1,599,808		475,773			마곡동	475,773
외발산동	1,410,326	984,039		426,286			마곡동	426,286
공향동	3,380,546	3,088,462		292,084			마곡동	292,084
방화동	5,030,139	4,950,537		79,602			마곡동	79,602

【관 련 법 규】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행정구역 조정업무에 관한 규칙

제9조의2(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1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면에 걸쳐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법 제4조의2제1항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3. 행정구역 변경도